

2020년도 제5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4. 10.(금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9건(안건번호 제2020-8019호~805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상기 안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함. 다만 이미 전송이 중단되었거나 삭제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

- B 위원 : 본건 심의안전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전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국내외 영상제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전번호 제2020-8019호~8058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전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본 심의 대상 40개의 안전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방송 저작물 49개를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위해 전송하는 것이다.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때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있고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D 위원 : 금번 심의 안건은 웹하드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국내외 최신 영상저작물(방송)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복제물의 복제/전송자들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스트리밍, 복제물 파일의 업로드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최신 영상물의 온라인 유포라는 점에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0년 제5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10.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